

---

# 현 장 설 명 서

---

2026년 체육시설2부 조경시설 환경 유지관리공사(예초)

2026. 5.



## I 사업개요

- 공 사 명: 2026년 체육시설2부 조경시설 환경 유지관리공사(예초)
- 발 주 처: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2부
- 공사위치 및 내용

위치	공사내용	공사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산체육공원(송산면 삼일공원로 13)</li> <li>- 비봉1야구장(새솔동 167)</li> <li>- 비봉2야구장(새솔동 167)</li> <li>- 비봉 궁도장(새솔동 168)</li> <li>- 봉선체육공원(수노을중앙로 244)</li> </ul>	조경시설 예초(2회)	40,445m <sup>2</sup> (20,223m <sup>2</sup> × 2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2026. 6. 15. ~ 8. 24.)

예초 작업 회별 착공 및 작업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 분	회수별 착공 및 작업기간	일수	비 고
1회 시기	2026. 6. 15. ~ 6. 29.	15일	각 회 시기별 공사 일정은 발주처 감독자와 별도 협의하여 기간내에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한다.
2회 시기	2026. 8. 10. ~ 8. 24.	15일	

## II 계약목적

본 공사는 체육시설2부(화성도시공사) 관리 조경시설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정돈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I 사업수행

### 1.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 수행이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설계내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
  - ④ 공사 내용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가 현장 확인 및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계약관련서류 검토 등을 면밀히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2. 시공방법

### 2.1. 예초

- 1) 잔디의 깎기 높이와 횟수는 잔디의 종류, 용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한다.
- 3) 초장이 3.5~7 cm에 도달할 때 깎으며, 깎는 높이는 2~5 c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2.2. 일반사항

- 1) 예초기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 2) 예초 작업 시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한다.
- 3) 예초 작업 시 작업범위 내 폐기물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토록한다.
- 4) 예초 실시 중 작업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미준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예초 작업 시 잔돌 파편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차량 및 사람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3. 공사 안전보건관리

### 3.1. 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사항

- 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체육시설2부 조경시설 환경 유지관리공사(예초)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성도시공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3)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예초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여부, 돌튕방지 가림막 설치, 차량·보행자 통제방식, 유도자 배치, 보호구 지급·착용, 우천·강풍·폭염 시 작업중지 기준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2.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계약 대상자는 작업 중 현장 대리인, 작업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근무직원 및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안전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4. 기타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재위탁할 수 없다.
-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 3)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체육시설별로 작업 완료시 감독자에게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예초 결과가 미흡한 곳은 재작업을 실시하며, 재작업에 따른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IV 단계별 서류 안내

### 1. 계약 시(각 1부)

- ①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각서
- ③ 계약상대자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 ④ 관련 면허증(자격증), 면허수첩 사본
- ⑤ 통장사본
- ⑥ 착공내역서
- ⑦ 기타 발주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 2. 착공 시(각 2부)

- ① 착공계 제출 공문표지 2부
- ② 착공계 2부
- ③ 내역서 2부
- ④ 현장대리인계(총괄책임자) 2부

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2부

⑥ 예정공정표 2부

⑦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2부

⑧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2부

⑨ 안전·환경관리계획서 2부

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⑪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산재·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원 제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 원본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제출서류 낱장마다 사용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 3. 준공 시(각 2부)

① 준공 제출 공문표지 2부

② 준공계 2부

③ 준공검사원 2부

④ 준공정산내역서 2부

⑤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 2부

⑥ 준공 완료확인서 [붙임1]

⑦ 사진대지 [붙임2] 2부

⑧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 작성)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종사자수 :       명	□ 대표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 대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0년 명 또는 %	2021년 명 또는 %	2022년 명 또는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 활동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 (위험요인 확인·관리대책)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기계기구, 장비)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비상대책

■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 수급업체 안전보건 조치능력 적정성 여부 ※ 해당 부서에서 적합 여부 체크 후 결재 처리

구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			
3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적정성 여부			
4	비상조치 체계 구축 여부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